1. 개정이유

국내 반입되고 있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성조사 등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성조사 세부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실시 등(안 제4조의3 신설)

법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를 규정(제9조의4)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제4조(안전성조사 실시 등), 제8조(결과보고), 제10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12조(수수료), 제13조(시료의 보관 등), 제14조(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등을 준용하도록 함

나. 직접구매 해외제품 조사결과의 조치(안 제10조의2 신설)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 위반 시 동일 제품 모델을 기준으로 하고,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부적합 처리 기준에 따라 “최중결함”, “중결함”에 해당시 해당 제품 사이버몰에서 게재된 해당제품 삭제 조치 권고토록 함

다. 안전성조사 결과의 공표 양식 신설(안 제15조 개정)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공표시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라 공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 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1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등) 법 제9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8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로 본다.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이하 “부적합”이라 한다)한 제품에 대해 법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대상 제품의 범위는 동일 제품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치할 때 부적합 내용이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생활용품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에 따른 “최중결함” 또는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에 따

라 해당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조치 권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성조사결과의 공표) 단서로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 ‘정보 등의 삭제 등 권고 양식’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제4조의3(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등) 법 제9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8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로 본다.
< 신 설>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이하 “부적합”이라 한다)한 제품에 대해 법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대상 제품의 범위는 동일 제품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할 때 부적합 내용이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생활용품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에 따른 “최중결함” 또는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에 따라 해당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조치 권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성조사결과의 공표)_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_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해수준에 따라 공표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표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3.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 제품안전정보망(www.safetykorea.kr)을 통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표하되, 대국민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 4. 경미한 결함이 확인되었으나 대국민 주의가 필요한 위해 또는 반복적으로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자가 생산·판매한 제품의 위해 등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위해의 내용을 제품안전정보망이나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성조사결과의 공표)_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리콜공표양식’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② ---------- ---------- ---------- ----------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 ‘정보 등의 삭제 등 권고 양

< 신 설>	식’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 [별지 제6호의2서식] **정보 등의 삭제 등 권고 양식**

조치구분	조사세부내용			
조치 제품	품목명 (종류)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 국가	
	해외통신 판매중개자		브랜드	
	판매페이지(URL)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부적합 및 위해 정보	부적합 내용			
	제품결함 위해정보			